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0,281,619	14,108,449
일반회계		447,383,776	13,421,513
특별회계		22,897,843	686,935
	기타특별회계	22,897,843	686,93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4,679	15,740
	주차장 특별회계	12,704,265	381,12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005,266	30,158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601,143	48,034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57,838	10,735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6,704,652	201,1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896,724천원(일반 3,345,061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551,66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